

# 「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」 개정 건의(안)

(한국보험계리사회, '25.12.31.)

- (개요) 계리사회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외부검증기관의 검증업무 품질 제고 등을 위해 감독원 주관 하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(2023년 6월)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
-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검증기관의 실제 IFRS17 준비금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2차 개정안을 마련함
- \* 가이드라인 총론 제3조(운영) 본회는 매년 검증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(개정) 가이드라인 2차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
- ① IFRS17 준비금 검증 실무 사례 반영
  - ② 표준검증시간·품질관리 핵심지표 현실화
  - ③ 관계법령, 규정 등의 개정사항 반영 등
- (작업반) 실제 가이드라인 활용 주체인 외부검증기관 주도로 2차 개정안 마련(세부 명단은 붙임 1 참고)
- (일정) 작업반 구성 및 운영(25.03~25.10) → 2차 개정 초안 마련(25.11) → 업계·당국 의견 수렴 및 반영(~26.01.14) → 최종 개정안 마련 및 계리실무기준원 의결(26.01)
- 이번 2차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6년도 신규 계약부터 적용 권고

## 1. 배경 및 문제점

-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은 계리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나, 실제 검증 수행 과정에서 검증업무를 총괄하는 자(PM)가 계리사가 아닌 경우가 일부 존재
  - 이 경우, 책임준비금의 복잡한 산출 구조 및 계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,
  - 검증 결과의 신뢰성·적정성 부족, 검증 의견의 일관성 미흡, 대외 설명력·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
- 또한, 품질관리 핵심지표 부분도 2개년 간의 공시 경과에 따라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

## 2. 개선 방향

- 책임준비금 검증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차원에서 검증업무 책임자는 계리사(5년 이상 경력 및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자)로 지정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자 함
  - 또한, 검증업무 책임자는 0.2M/M 이상 검증업무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검증업무 전 과정에 대한 총괄 및 관리 책임 부여
  - 이를 통해 외부검증의 품질을 제고하고,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검증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품질관리 핵심지표 표준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을 일부 수정·보완

### 3. 개정 건의(안)

① 총론 수정: 검증의 적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증업무 책임자(5년 이상의 경력 및 결격사유가 없는자)를 계리사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O.2 M/M 이상 직접 검증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 신설

현 행	개 선 (안)
<p>제4조(검증) ① 외부검증기관은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산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부검증기관은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검증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(한 회사의 상품 검증업무 등에 참여한 검증인력은 그 회사의 준비금 검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한다)</li><li>2. 검증 계획 및 검증 절차 수립</li><li>3. 검증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</li><li>4. 검증보고서의 작성 등 검증업무의 관리</li><li>5. 검증결과의 보고기준</li></ol> <p>(신설)</p>	<p>제4조(검증) ① 외부검증기관은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산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부검증기관은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검증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(한 회사의 상품 검증업무 등에 참여한 검증인력은 그 회사의 준비금 검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한다)</li><li>2. 검증 계획 및 검증 절차 수립</li><li>3. 검증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</li><li>4. 검증보고서의 작성 등 검증업무의 관리</li><li>5. 검증결과의 보고기준</li></ol> <p><u>③ 외부검증기관이 제1조에 따른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, 검증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보험업법」 제182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를 검증업무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증업무 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</li><li>2. 최근 5년 이내에 「보험업법」 제134조제1항 제1호(문책만 해당한다) 및 제3호,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자</li></ol> <p><u>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업무 책임자는</u></p>

<p><u>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증 계획 및 절차는 실무매뉴얼의 ‘단계별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 목록’ 및 ‘책임준비금 검증프로세스’ 등을 적절히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해당 검증업무에 대하여 0.2M/M(Man-Month) 이상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, 검증업무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 및 관리 책임을 진다.</u></p> <p><u>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증 계획 및 절차는 실무매뉴얼의 ‘단계별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 목록’ 및 ‘책임준비금 검증프로세스’ 등을 적절히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
--	--

## ②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수정: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에 해당 검증업무를 총괄한 검증업무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수정

현 행								
3. 검증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검증시간								
인원수 및 시간	검증참여자	담당이사 (업무수행이사)		등록 보험계리사		非 보험계리사		합계
		당기	전기	당기	전기	당기	전기	
투입 인원수								
투입시간	최적가정							
	최초검증							
	결산검증							
	결산검증(기타)							
	합계							

### 개 선 (안)

#### 3. 검증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검증시간

검증업무 책임자	
계리사등록번호	

(단위 : 명, 시간)

인원수 및 시간	검증참여자	담당이사 (업무수행이사)		등록 보험계리사		非 보험계리사		합계
		당기	전기	당기	전기	당기	전기	
투입 인원수								
투입시간	최적가정							
	최초검증							
	결산검증							
	결산검증(기타)							
	합계							

**[3] 품질관리 핵심지표 수정: 외부검증기관이 매년 제출하는 품질관리 핵심 지표 검증업무 부분에 각 업무를 총괄한 책임계리사를 명시하도록 수정**

- 추가로 각 구분별 검증시간 및 검증인력 항목을 추가하여 핵심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 제고

현 행						
2-2. 검증업무 수행건수						
연번	구분	회사명	검증의견	검증업무 책임자	검증시간	검증인력
1	IFRS17 책임준비금 검증	OO 손해보험	적정 / 한정 / 부적정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:						

  

개 선 (안)						
2-2. 검증업무 수행건수						
연번	구분	회사명	검증의견	검증업무 책임자	검증시간	검증인력
1	IFRS17 책임준비금 검증	OO 손해보 험	적정 / 한정 / 부적정	홍길동	(검증보고서 기준)	(평균 검증인력 수)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:						

## 1. 배경 및 문제점

- IFRS17 도입에 따라 2023년 6월,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표준검증시간이 제정되어 자율규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
  - 다만, 외부검증기관의 2023~24년의 실제 검증시간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, 표준검증시간 대비 실제검증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중소형 손해보험사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짐
  - 외부검증기관에서는 제한된 검증시간으로 인해 외부검증의 품질 확보 및 적정성 검토의 깊이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
- 이에 실제 수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검증시간을 현실화하고, 보험사별 특성과 검증 난이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

## 2. 실제 검증시간 분석

11개의 외부검증기관\*의 2023~2024년 검증보고서 및 실제 수행시간을 기준으로 표준검증시간 대비 실제 검증시간이 적정한지를 분석함  
 \* 글래스, 더맵, 삼정, 서울, 선금융, 써미트, 우리, 프라임, 한국계리, GS, SIG

구분	최초검증				계속검증			
	평균	중앙값	최저	최고	평균	중앙값	최저	최고
가군	92.7%	88.7%	58.9%	134.3%	102.5%	97.6%	74.2%	146.9%
나군	88.2%	87.9%	63.2%	110.1%	103.3%	106.9%	81.7%	114.0%
다군	87.9%	94.4%	53.3%	125.1%	92.9%	89.6%	78.0%	111.0%
라군	112.0%	112.0%	102.1%	120.0%	166.4%	161.4%	128.6%	214.3%
평균	95.2%	96.0%	69.4%	122.3%	116.3%	113.9%	90.6%	146.5%

\* 각 항목은 표준검증시간 대비 실제 검증시간의 비율(%)을 의미

(예: 80% → 실제검증시간이 표준검증시간의 80% 수준)

→ 표준검증시간과 비교하여 최초검증은 적정 수준 내에서 실제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나, 계속검증의 경우 다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실제 검증시간이 초과됨

- 특히, 소형사(라군)는 현행 표준검증시간을 초과하는 경향이 뚜렷 하며, 계속검증 시 시간 부족 현상이 심화됨
- 동일 자산군 내에서도 보험영역(종합 vs 단종, 복합채널 vs CM채널 등)에 따라 수행시간 차이가 존재

### 3. 개정 건의(안)

외부검증기관의 2개년 데이터를 전수 조사했으나 표본이 부족하여 표준 검증시간 상향 논의에는 근거가 미흡함. 이에 우선 최소 권고수준(80%→90%) 상향과 자산군별 조정을 중심으로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

#### ① 최소검증시간 상향(현행 표준검증시간의 80% 이상 → 90% 이상)

- 2023~2024년 외부검증기관의 실제 최초·계속 검증시간이 각각 표준검증시간 대비 평균 95.2%, 116.3% 수준이며, 자산군별로도 90% 수준을 검증하고 있음

현 행	개 선 (안)
<p>2. 표준검증시간</p> <p>② ‘①의 표준검증시간’을 기반으로 한 자산 규모별 검증기간 차등 기준 (중략)</p> <p>① 최초검증 시, 차등기준 (중략)</p> <p>◦ 회사별로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및 판매기간, 판매상품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, 최소검증시간은 표준검증시간의 <u>80% 수준</u>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권장</p>	<p>2. 표준검증시간</p> <p>② ‘①의 표준검증시간’을 기반으로 한 자산 규모별 검증기간 차등 기준 (중략)</p> <p>① 최초검증 시, 차등기준 (중략)</p> <p>◦ 회사별로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및 판매기간, 판매상품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, 최소검증시간은 표준검증시간의 <u>90% 수준</u>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권장</p>

<p>② 계속검증 시, 차등기준 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사별로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및 판매기간, 판매상품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, 최소검증시간은 표준검증시간의 <u>80% 수준</u>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권장</li> </ul>	<p>② 계속검증 시, 차등기준 (중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사별로 경영하는 보험종목의 특성 및 판매기간, 판매상품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, 최소검증시간은 표준검증시간의 <u>90% 수준</u>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권장</li> </ul>
--	--

## ② 자산군별 조정(현행 자산군별 가·나·다·라군 → 가·나·다군으로 조정)

- 현행 가군(20조 이상), 나군(5조 이상~20조 미만), 다군(1조 이상~5조 미만), 라군(1조 미만) 구분을 가군(同), 나군(同), 다군(5조 미만)으로 조정

### 현 행

#### 2. 표준검증시간

- ② ①의 표준검증시간'을 기반으로 한 자산규모별 검증기간 차등 기준  
(중략)

구분	자산규모	생략
가	20조 이상	
나	5조 이상~20조 미만	
다	1조 이상~5조 미만	
라	1조 미만	

### 개 선 (안)

#### 2. 표준검증시간

- ② ①의 표준검증시간'을 기반으로 한 자산규모별 검증기간 차등 기준  
(중략)

구분	자산규모	생략
가	20조 이상	
나	5조 이상~20조 미만	
다	5조 미만	

\* 최초/계속 검증 시, 차등 기준에 "라"군 부분은 모두 삭제

## 1. 배경 및 방향

- IFRS17 도입 이후 2개년 실무 적용 과정에서 가정 산출·모델 검증·재보험 검증 등 일부 기준이 실제 검증 환경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
  - 특히 2024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정된 「계리적 가정 산출 및 적용에 관한 실무표준」과 현행 실무매뉴얼 간 정합성이 부족하고, 문서화·검증 기준의 상세성이 미흡하여 기관별 편차가 발생
- 이에 실무 일관성·적정성·문서화 강화를 목표로, 검증 기준을 정비하고 항목별 세부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

## 2. 주요 개정 건의(안)

### ① 계리적 가정 관련 사항 보완

- 위험률·해약률·사업비·대출·계약자행동 등 전(全) 가정 영역에 대해 당국 실무표준과 정합성 있게 매뉴얼 정비
- 기초통계 제외·보정·조정 근거, 미래추세 반영, 모형 선택(원칙·예외모형) 등 문서화 의무 강화

### ② 검증 기준의 세분화 및 체크리스트 정비

- 기존 포괄적 기준을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 검증 요소를 체계화하고, 체크리스트는 실제 실무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체 질문 중심으로 개정

### **[3] 재보험 검증 체계 신설·강화**

- 재보험 계약집합 구분(수익성·측정시점 등) 신설 및 출재미경과보험료·손실회수요소 등 재보험 변동분석 항목 신설로 모니터링 기능 강화
- 산출가정(출재율·손실회수율·기대신용손실 등) 검증 범위 확대

### **[3] 모델 및 부채 검증 부분 보완**

- 현금흐름모델·보험취득현금흐름·부리이율(EIR) 매뉴얼을 실무 표준과 조직 규정에 맞춰 정합화
- 변동분석 기준 및 검증 절차(특히 생·장기·일반손해보험)를 일관되게 정리

### **[4] 선임계리사 검증 실무표준 개정사항(2026년 적용) 반영**

### **[5]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(비상위험준비금 관련, 2025년 12월 31일 시행) 반영**

※ 전체 실무매뉴얼 개정안은 별첨의 변경대비표 전문 참고

**불 임****가이드라인 2차 개정 작업반 명단**

구분	성명	소속	담당영역	이메일
반장	김달수 대표	나우계리 (계리법인위원회)	총괄	dalkim72@nowactuary.com
	함승우 대표	서울계리	모델검증 (생명/장기손해)	swham@esas.co.kr
	이강복 전무	써미트	모델검증 (일반손해)	kangbok.lee@summitanc.co.kr
	최인수 선임	개발원	가정검증	insu.choi@kidi.or.kr
위원	오유창 수석	더맵계리	잔보부 (일반손해)	ycoh130@the-map.co.kr
	한성희 상무	우리계리	이익잉여금 내 준비금	shhanr@naver.com
	한명진 이사	SIG계리	잔보부 (생명/장기손해)	myoungjin.han@sig-partners.com
	윤명식 이사	선계리	발사부	myyun@sunactuary.com
간사	정도희 팀장 주윤정 사원	계리사회	표준검증시간, 품질관리핵심지표 및 회의록 작성	dh.jeong@actuary.or.kr yj.joo@actuary.or.kr